

의안번호	제 104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6월 3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1
----------	------

제출연월일 : 2022년 6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민원인의 납부 편의 증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한 수수료 징수방법 확대(안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항목 정비(안 별표 1)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제증명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2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 액
1. 증명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
2) 하자보증금 납부 증명	1통	300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
4) 실적증명 (공사, 물품, 용역)	1통	300
나. 기타 제증명		
1) 원자재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1통	3,500
나) 확정소요량	1통	1,200
2)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1)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350
2) 기타 각종 인가, 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신청	1건	50,000
2)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3)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4,000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u>충청북도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청구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사무를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 (내부위임을 제외 함)처리할 때에는 <u>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징수한다.</u></p> <p>③ <u>충청북도 수입증지 구입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u></p>	<p>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u>충청북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u></p> <p>② <u>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제증명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u></p> <p><u><삭 제></u></p>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22. 1. 11. 법률 제1874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12. 시행 예정]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첨부제외 사유

- 안 제3조(징수방법)는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김주희